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	<h1>보도자료</h1>	2016. 3. 18(금)	
		작 성 문 의	규제혁신기획관실 기획과제과 과장 서영석 / 사무관 지사향 (Tel. 044-200-2912)
엠바고	3.18일 15시 30분(위원회 회의 종료) 이후 사용		

‘신산업 규제혁신의 깃발을 올리다’ 신산업투자위원회 출범

- 제1차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최
- ‘원칙 개선·예외 소명’의 네거티브 규제심사 등 향후 운영방안 논의
- 민간이 결정하는 규제시스템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시작

- 신산업투자위원회가 18일 5개 분과 11개 소위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.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산업계, 학계 등 민간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융복합 산업 관련 규제를 심의 또는 설계하고 우리가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.
 - 이날 열린 첫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였으며, 이동근 총괄위원장(대한상의 부회장) 등 위원 30여명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였다.
 -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‘신산업 규제혁신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’라는 점에 공감하고 기존과 다른 새로운 틀의 규제혁신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.
 - 한편,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‘신산업 관련 접수·발굴된 규제애로는 소관부처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고, 제로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’고 당부하면서

- 정부는 '규제개혁이 대한민국의 미래생존전략'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 할 것'이라고 밝혔다.

□ 앞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는 개별기업, 경제단체 등이 발굴한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대상으로 '원칙 폐지·개선, 예외 소명' 등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통해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나갈 계획이며 그 결과는 규제포털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.

※ (붙임) 신산업투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향

□ **추진배경**

- 융복합·신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‘원칙 개선, 예외 소명’의 네거티브 규제혁신 방식 도입

⇒ 민간 주관 ‘신산업투자위원회’를 통해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

□ **신산업투자위원회 개요**

- (기능) 신산업 관련 협회·단체, 개별 기업, 관계부처 등을 통해 발굴·접수된 신산업 관련 규제애로 해소

* 접수된 규제애로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규제존치 여부 ‘사실상’ 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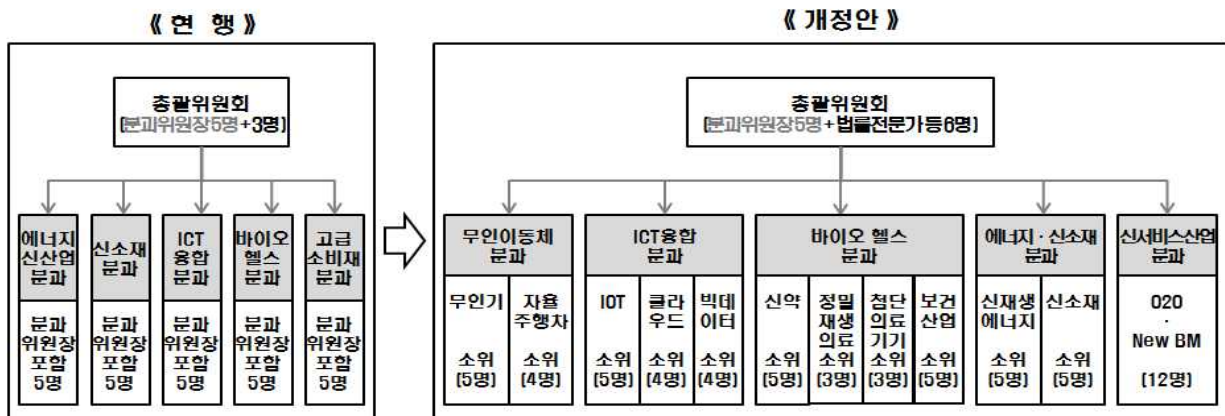
- (법적 근거) ‘규제개혁장관회의 규정’(대통령 훈령)

제9조(조정회의) ③ 조정회의 의장(국무조정실장)은 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- (구성)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, 자체 발굴 및 관련 부처(산업부, 미래부 등) 추천을 통해 5개 분과(11개 소위), 60여명 인력 Pool 구축

* 산업부가 既구성한 5개 분과, 28명 ⇒ 5개 분과(11개 소위), 60여명으로 확대 개편

** 각 분과는 産(28명,43%), 學(21명,32%), 研(14명,20%), 기타(3명,5%) 등으로 구성



□ 신산업투자위원회 운영방향

○ (과제 발굴) 정부 자체 발굴 및 경제단체, 개별기업 건의 등 다양한 채널 활용, 발굴·접수된 과제는 규제포털(www.better.go.kr)에 공개

- ① 국무조정실 5+3 Project* 및 산업부, 미래부 등 발굴 과제
- ② 대한상의, 벤처협회,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 건의 과제
- ③ 규제포털內 '신산업 규제애로' 접수창구 운영 등

* 5 : △무인기 △사물인터넷(IoT) △스마트 자동차 △바이오 헬스 △3D 프린팅 (국조실)
 3 : △빅데이터 △클라우드 △O2O (미래부 등 관계부처 협업)

○ (심사 방식) 총괄위원회와 분과위원회, 2단계 심사 진행

- ① 제1단계(분과위): 규제소관 부처 소명 및 검토의견 제시
- ② 제2단계(총괄위): 분과위 검토의견에 대한 검토 및 조정

<각 분과위 담당 분야(예)>

- ① 무인이동체: 무인기, 자율주행차 등
- ② ICT 융합 : IOT, 클라우드, 빅데이터 등
- ③ 바이오헬스 : 신약개발, 정밀재생의료, 첨단의료기기, 보건산업 등
- ④ 에너지·신소재 :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, 신소재 개발, 전기차 등
- ⑤ 신서비스 산업: O2O, 공유경제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사항

○ (과제 처리) ① 규제소관 부처가 위원회 의견 수용시 제도개선
 ② 불수용 과제는 규제조정회의(국조실장 주재)에서 해결

○ (결과 보고) ① 처리된 결과는 '규제개혁장관회의' 또는 '무역투자진흥회의'에 보고 ② 규제포털에 처리결과 공개

《 업무흐름도 》

